
2019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 및 사례



2020. 2.

서울대학교
[상근감사실]

2019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

□ 감사 운영 방향

- 대학 및 부속·연구시설 감사 실시
- 학내 요청을 기반으로 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

- 실시 기관
 -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 본부 부속시설 등 4개 기관(2019. 4. ~ 2019. 7.)
-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 2건 14명
 - 시정 : 재정 7건(721,565천 원)
 - 경고·주의(기관) : 11건
 - 통보 : 5건

□ 감사 주요 지적 내용 및 촉구 사항

-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투명성 제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방만한 예산 사용 금지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등의 자의적인 지급 금지
 - 수입금 징수·세입 업무 및 미납금 관리 철저 촉구
 - 회계관계직 등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예산 집행 및 회계 업무 처리 촉구
- 인사 및 복무 관리 철저
 - 임면 권한이 없는 자의 보직 직무대리 자체 임명 금지

- 보직교수 연구년 활용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촉구
- 직원 복무 관리 철저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
-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또는 부당 지급 금지

○ 규정 준수 및 정비 촉구

- 협약 및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임대료 및 연구장비 관련 제 규정 정비 촉구
-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 및 여비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기타

- 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른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
- 용역계약 내용 임의 변경 금지 및 용역계약 관리 철저 촉구

2019년 상반기 자체감사 주요 감사사례

□ 예산·회계업무 관리 및 집행 부적정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방만한 예산 사용 금지
- 회계관계직 등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촉구
- 입찰 대상 금액 수의계약 금지
- 용역계약 관리 업무 철저 촉구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이체) ①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회계원칙) ②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42조(지출원인행위 등의 위임) ②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는 위임 받은 직원(이하 "재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으며, 지출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직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58조(감독) ①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나 그 밖의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검사) ①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대가의 지급) 공사·제조·구매·용역계약이나 그 밖에 본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중략)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단, 물품의 제조·구매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등)를 이용하여 안내 공고를 하는 등 소액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결정·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수입금 징수·세입 및 미납금 관리 부적정

- 법인회계 외 재원에 수입금 납입 및 본부 기본운영경비 미납 금지
- 미납 수입금 징수 촉구 및 법인회계 세입 처분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4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다른 규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법인회계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 방법)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부의부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수입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야 하며, 각 기관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수입금은 법인회계(수입대체경비)의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직접사용 금지)
- 세입 발생시에는 수입징수원(분임수입징수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원(분임수입징수원)은 지체없이 차세대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입 결의하여야 한다.
- 기본운영경비를 다음 세입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기본운영경비 부담금: 총 세입금의 15% 이상

【서울대학교 재산관리 규칙】

제27조(임대) ① 총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산을 임대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임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임대료) ① 재산을 임대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매년 청구한다.

□ 각종 수당 및 여비 지급 부적정

- 예산의 목적 외로 임의 지급된 성과상여금 회수 처분
- 입시 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된 입시수당 회수 처분
- 중복 지급 여비 회수 처분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교직원에 대학 보수, 수당 등 인건비는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규정 또는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
- 입시업무는 관리자 본연의 업무로 지휘·감독·관리 등 직무수행책임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입시업무 담당자에게는 ‘대학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교육부)을 적용하여 시간외 근무를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예산회계 관리규정】

제10조(회계운영의 원칙) 발전기금 예산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단위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제6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는 출발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 여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 인사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근무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이탈 금지
- 출·퇴근 기록 허위 등록 금지 및 과다·부당 수령 시간외근무수당 회수 처분
- 총장 승인 없이 보직 직무대리 자체 임명 금지
- 보직 교원의 연구년 선정 기준 및 관리 방안 마련 촉구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36조(복무에 관한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 부서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42조(연구년) ① 교원의 연구 성과를 높여 대학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를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이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를 말한다.